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6. 5 .----- 최광렬의원의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6. 6.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9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6.6.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

가. 제안이유

2006. 4. 28일(법률 제7935호)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본문 중 특별위원회의 명칭 부분을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본문 중 특별위원회의 명칭 부분 보완 정비
(안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 제1항, 제2항, 제82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 심사 및 보고 사항을 보완(안 제85조의2 신설)
-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과 선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보완(안 제8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함에 따라

-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조례 및 규칙내용 중 명칭부분을 개정하는 것임
- 또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내용도 수반하고 있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